

## 불임 1

##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(홈페이지 게시용)

### 세정지원 대상

- '1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,500억원 미만(자산총액 2,000억원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)인 「조특법」상 중소기업\*으로서
  - \* '19사업연도(19년 1~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 미적용
- '21년에 상시근로자 수\*를 '20년 대비 2% · 4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'일자리창출계획서'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
  - \* 상시근로자 수=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/해당연도의 개월 수
  - 단, '2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'20사업연도 보다 20% 이상 감소한 법인은 '21년 상시근로자 수가 '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

<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>

'19사업연도 수입금액	500억원 미만	500억원 이상 ~ 1,500억원 미만
일자리창출 비율	2% 이상	4% 이상

### 세정지원 내용

- 201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
###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
### 제출방법

- (인터넷)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·전송
  - \* 홈택스 로그인(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)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- (서면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

### 제출기한 : 2020. 11. 30.(월)

**불임 2****일자리창출계획서(서식)****일자리 창출 계획서**

※ 해당되는 [ ]에 ✓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

접수일자

**1. 신청인의 인적사항 (본점 기본사항 기재)**

사업자등록번호				법인명(상호)			
대표자				사업장 소재지			
업 종	/	전화번호		사업연도	( )월	결산법인	
2019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	(	)원	중소기업 여부	[ ]	**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**	청년창업 여부*	[ ] (청년친화) 강소기업 여부** [ ]

\* '15.1.1.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(병역기간 제외, 최대 6년 한도)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(출자자)

\*\*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, 청년친화 강소기업 (법인은 본점 기준)

**2. 2021년 근로자 고용 계획**

구 분	인 원	기 준
① 2020년 상시 근로자 수(기준)	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0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[12월(11월)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]</li> <li>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</li> </ul>
② 2021년 상시 근로자 수(계획)	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1년에 고용 예정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</li> <li>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</li> </ul>
③ 증가인원 수(②-①)	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소 1명 이상</li> </ul>
④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수 ⑤ 최종 증가비율 ([③+④]/①*100) 단, 청년창업기업과 (청년친화) 강소기업은 ((③*2)/①*100)	%	<p>④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0년 매월 말일 현재의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[12월(11월)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]</li> <li>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</li> </ul> <p>⑤ 최종 증가비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%, 수입금액 500억원~1,500억원 미만은 4%이상 이어야 함</li> <li>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</li> </ul>

※ 상시(청년·고령자·장애인)근로자 수 계산(외국인 근로자는 제외)

고용 연도	구분	해당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(청년·고령자·장애인)근로자 수												(13) 합계	(14) 개월 수	(15) 근로자수 (=13 ÷ 14)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	
2020	상시															
	청년·고령자·장애인															
2021	상시															
	청년·고령자·장애인															

**3.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:**

2021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이사)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무서장 귀하

### 불임 3

### 일자리창출계획서(작성 사례)

## 일자리 창출 계획서

\* 해당되는 [ ]에 체크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------	------

#### 1. 신청인의 인적사항 (본점 기본사항 기재)

사업자등록번호	<b>123-81-45678</b>		법인명(상호)	<b>(주)창출</b>	
대표자	<b>이국세</b>		사업장 소재지	<b>서울 종로구 종로5길 00</b>	
업종	<b>제조 / 소화기</b>	전화번호	<b>02-123-4567</b>	사업연도	(12)월 결산법인
2019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	<b>(55,000,000,000)원</b>		중소기업여부	[예] **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**	

\* 15.1.1. 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(병역기간 제외, 최대 6년 한도)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(출자자)

\*\*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, 청년친화 강소기업 (법인은 본점 기준)

#### 2. 2021년 근로자 고용 계획

구 분	인 원	기 준
① 2020년 상시 근로자 수(기준)	<b>98.7 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0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[12월(11월)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]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</li> </ul>
② 2021년 상시 근로자 수(계획)	<b>106.2 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1년에 고용 예정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</li> </ul>
③ 증가인원 수(②-①)	<b>7.5 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소 1명 이상</li> </ul>
④ 청년·고령자· 장애인 근로자수	④ 2020년 <b>35.0 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0년 매월 말일 현재의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[12월(11월)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]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</li> </ul>
⑤ 최종 증가비율 ([③+④]/①*100) 단, 청년창업기업과 (청년친화) 강소기업은 (③*2)/①*100	⑤ 2021년 <b>36.9 명</b> ④ 증가(⑥-④) <b>1.9 명</b> ⑤ 최종 증가비율 <b>9.5 %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1년에 고용 예정인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청년·고령자·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</li> <li>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, 음수는 0으로 봄</li> <li>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%, 수입금액 500억원~1,500억원 미만은 4%이상 이어야 함 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</li> </ul>

\* 상시(청년·고령자·장애인)근로자 수 계산(외국인 근로자는 제외)

고용 연도	구분	해당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(청년·고령자·장애인)근로자 수												(13) 합계	(14) 개월 수	(15) 근로자수 (=13 ÷ 14)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	
2020	상시	<b>98</b>	<b>98</b>	<b>98</b>	<b>98</b>	<b>98</b>	<b>98</b>	<b>97</b>	<b>97</b>	<b>100</b>	<b>102</b>	<b>100</b>	<b>100</b>	<b>1,184</b>	<b>12</b>	<b>98.7</b>
	청년·고령자·장애인	<b>34</b>	<b>34</b>	<b>34</b>	<b>34</b>	<b>34</b>	<b>34</b>	<b>34</b>	<b>34</b>	<b>37</b>	<b>38</b>	<b>37</b>	<b>36</b>	<b>420</b>	<b>12</b>	<b>35.0</b>
2021	상시	<b>100</b>	<b>102</b>	<b>102</b>	<b>110</b>	<b>110</b>	<b>110</b>	<b>110</b>	<b>105</b>	<b>105</b>	<b>105</b>	<b>105</b>	<b>1,274</b>	<b>12</b>	<b>106.2</b>	
	청년·고령자·장애인	<b>36</b>	<b>37</b>	<b>443</b>	<b>12</b>	<b>36.9</b>										

#### 3.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:

2021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이사)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무서장 귀하